

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에서 의결된  
서울특별시 동작구 폐기물관리 조례  
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  
다.

2015년 7월 30일

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

서울특별시 동작구 조례 제1219호

## 서울특별시 동작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

서울특별시 동작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3조제2항 중 “종량제봉투 및 납부필증 가격”을 “종량제 수수료”로 한다.

제21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- ② 제1항에 따른 판매소 지정취소가 있는 경우 다른 봉투판매소를 지정하여 지역주민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제24조제1항 중 “해당 폐기물을 수집·운반·처리한 자”를 “구”로 한다.

제26조의2 단서 “다만, 취소(변경) 신고는 해당 대형폐기물 수거전에 하여야 한다”를 삭제한다.

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

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 제2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[별표 3]

종량제 수수료(제13조제2항 관련)

1. 일반·재사용 종량제봉투 가격

구 분	일 반		재 사 용
	가 정 용	사 업 장 용	
5ℓ	130원		
10ℓ	250원		250원
20ℓ	490원	800원	490원
30ℓ	740원		740원
50ℓ	1,250원	2,000원	
75ℓ	1,880원	3,000원	
100ℓ	2,500원	4,000원	

2. 음식물류폐기물 종량제 수수료

구 분	2ℓ	3ℓ	5ℓ	10ℓ	120ℓ (공동주택용 납부필증)	kg
종량제 수수료	190원	300원	500원	1,000원	12,000원	130원

3. 공사장생활폐기물 종량제봉투 가격

폐기물의 종류	부과 기준	봉투가격
건축폐재류, 폐유리류, 폐도자기류 등	50ℓ	5,100원/매

※ 종량제봉투 판매가격=수집·운반비+처리비(반입수수료)+제작비+판매이윤

## 서울특별시 동작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

### □ 개정이유

- 지난 16년 간 동결된 종량제 수수료를 현실화하여 청소서비스의 질 향상을 통한 안정적인 폐기물 수거체계를 확보하고, 현행 수집·운반 대행체계인 독립채산제가 「지방재정법」 위반이라는 법제처의 해석에 따라 향후 종량제 수수료를 구 예산으로 편입하는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「지방재정법」 취지를 준수하기 위함.
- 구민에게 부담이 되는 불합리한 규제 조항을 삭제함

### □ 주요내용

- 가. 종량제 수수료 인상(안 제13조제2항)
- 나. 종량제 수수료의 구 세입조치(안 제24조제1항)
- 다. 불합리한 규제 조항 개선 및 삭제(안 제21조제2항, 제26조의2)